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 망 정경술의 상속인 권이옥 외 5명 소유물건
(2024타경113981)

의뢰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양제륜

감정서번호 : HB14-241029-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하나에셋

TEL. 02-2252-6995

FAX. 02-2252-6997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박 동 빈

박 동 빈

(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하나에셋 은민수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철역사천팔백만원정(₩748,000,000.-)					
의뢰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양제륜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1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망 정경술의 상속인 권이옥 외 5명 (2024타경11398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 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11.04	2024.11.04 ~2024.11.04	2024.11.05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정평가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아파트	1세대	아파트	1세대	-	748,000,000
	합 계					₩748,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은민수					
			殷民洙		(인)	

I. 기본적인 사항의 확정

1.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47번지 외				
주용도	아파트	사용승인일	1990.09.06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건물연면적	12,659.22㎡		
토지면적	124,817.4㎡	용도지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		
전체층수	지상15층 지하1층	규 모	120세대		
대상물건 내역	층 · 호수	면 적 (㎡)		합 계 (평형)	대지권면적 (㎡)
		전 유	공 용		
	323동 제5층 제507호	79.07	26.42	105.49 (약 31.91)	56.26

2. 감정평가 개요

가.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소재 지하철1호선 「창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명칭 ‘창동주공아파트 323동’ 제5층 제507호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경매목적에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나. 감정평가 근거

본건 부동산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의 감정평가의 관계법규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원칙에 근거하여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 조건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라.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본건의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4.11.04.로서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가격수준 등을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4.11.04.입니다.

3. 그 밖의 사항

- 본건 현장 조사시 이해관계인 등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감정평가사협회 내부자료 및 기타자료 등을 종합고려하여 인근 동 유형의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내부상태 및 구조, 마감자재 등을 기준하였는바 실제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1. 감정평가의 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으로서 ①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원가방식 ②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비교방식 ③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수익방식의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각 방식에는 ①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②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가. 원가방식

원가방식은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감정평가 방식으로서 원가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적산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나. 비교방식

비교방식은 시장성의 원리를 따르는 감정평가 방식으로서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 수익방식

수익방식은 수익성의 원리를 따르는 감정평가 방식으로서 수익환원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수익분석법 등으로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가. 선정원칙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또는 평가조건에 따라 감정평가 3 방식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따르되, 그 방법으로 구한 가격이나 임료를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격 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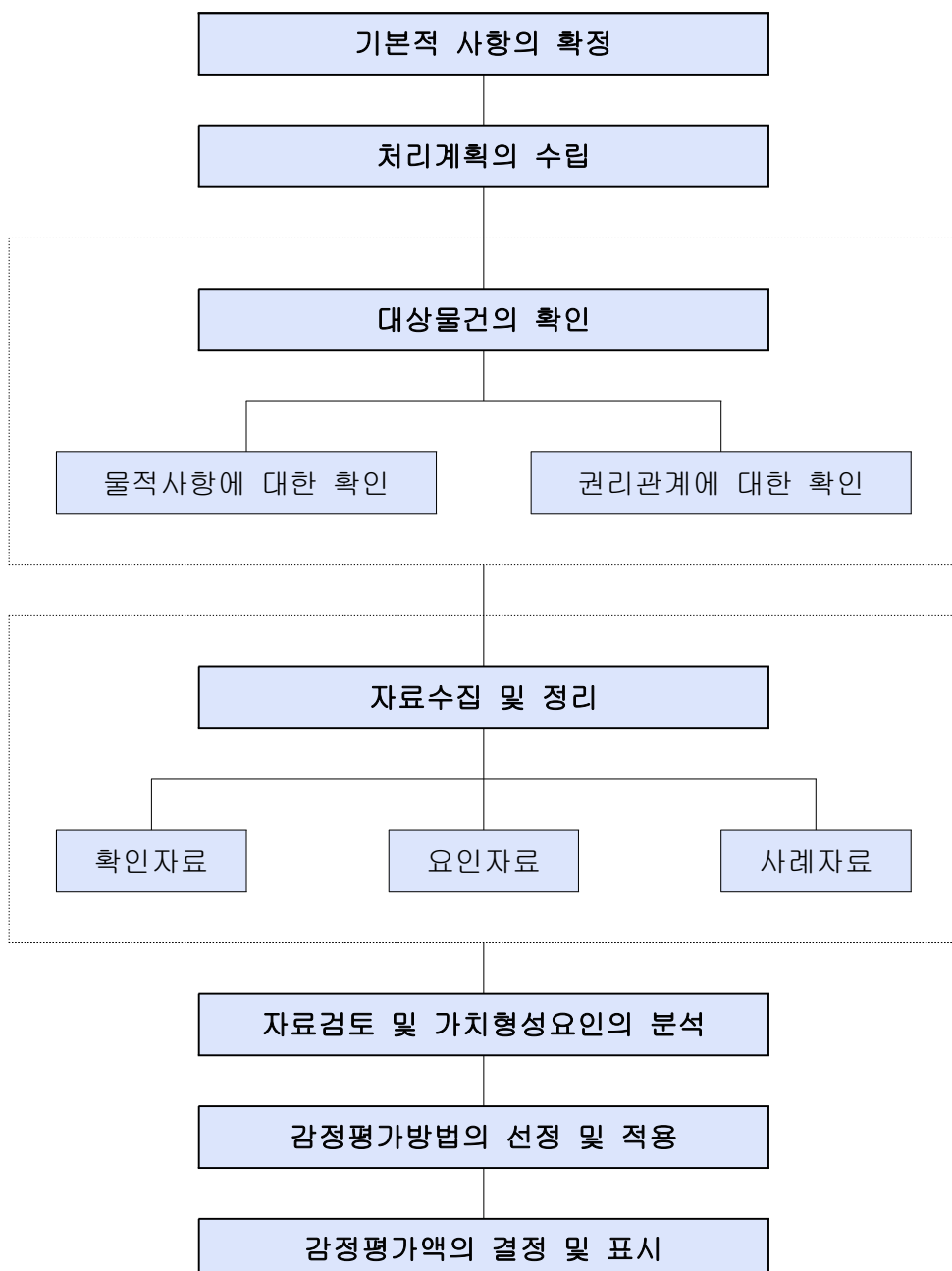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여 구분건물의 주된 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하되,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등을 검토하여 비준가격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합니다.

■구분건물의 주된 평가방법 :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

4. 감정평가의 절차

본건의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평가원칙에 근거하여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III 대상물건의 개황

1. 입지조건

가.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소재 지하철1·4호선 「창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등이 밀집한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나.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역(1·4호선: 창동역) 및 간선·지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 보통입니다.

다.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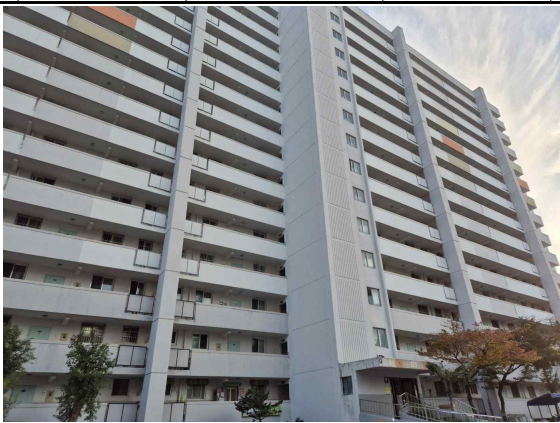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47번지 외

2. 대상물건 개요

가. 토 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일련 번호	지번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형상 지세	도로 교통	공시지가 (원/㎡)
1	347	101,247.3	대	제3종 일반주거	주거용	부정형 평지	광대 소각	3,546,000
2	350	23,570.1	대	제2종 일반주거				3,058,000

나. 건 물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47번지 외					
건물의 용도	아파트		사용승인일		1990.09.06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건물의 규모		12,659.22㎡	
설비의 개요	위생 및 급배수	난방시설	소화설비	승강기	가스시설	기 타
	○	○	○	○	○	주차장
대상물건 내역	동 · 호수	면 적(㎡)		총 면적 (㎡)	대지권면적 (㎡)	
		전 유	공 용			
	323동 제507호	79.07	26.42	105.49	56.26	
본건 소재 건물 현황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거래사례 등을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정합니다.

거래사례비교법	$\text{사례가액}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 \times \text{면적} = \text{시산가액}$
---------	---

2. 거래사례의 선정

가.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본건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중 본건과 비교성이 높으며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거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지번	동/ 호수	면 적 (㎡)		용 도	거래가격(원)	거래시점
			전유	대지권		단가/전유(㎡/원)	사용승인
1	창동 347 외	321/ 80*	79.07	56.26	아파트	755,000,000	2024.06.08
						9,548,501	1990.09.06
2	창동 347 외	320/ 110*	79.07	56.26	아파트	759,000,000	2024.06.13
						9,599,089	1990.09.06
3	창동 347 외	323/ 90*	79.07	56.26	아파트	750,000,000	2024.05.09
						9,485,266	1990.09.06

나.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의 거래사례 중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사례중에서 본건과 동일· 유사 전유면적 사례로서 가치형성요인상의 비교성이 높은 「거래사례 1」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4. 사정보정

선택한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추정되어 사정보정은 불필요 합니다.

사정보정률	1.00
-------	------

5. 시점수정

시점수정치는 서울시 강북지역 동북권 도봉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감정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2021.06 = 100.0)

가. 적용지수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서울시, 강북지역, 동북권, 도봉구)

기 호	사 례		본 건		시점수정치 (B/A)	비고
	매매시점	지수 (A)	기준시점	지수 (B)		
사례1	24.06.08	85.0	24.11.04	85.9	1.01059	-

※ 2024년 09월지수를 적용함.

나. 기준시점 : 2024.11.04.

6. 가치형성요인비교

가. 개 요

집합건축물의 가격은 일반부동산과 달리 단일 혹은 수 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일단의 토지상에 소재하는 일동의 건물에 다수의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가치형성요인은 전체부동산에 대한 가치형성요인과 대상 구분소유건물 자체의 가치형성요인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형성요인의 구분으로서 전체부동산에 대한 가치형성요인은 ①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외부적요인(입지요인)과 ② 구분소유권이 속하는 건물 전체에 대한 내부적요인(건물요인)으로 구성되며 ③ 구분소유건물 자체의 가격형성요인으로서는 구분소유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개별적요인(호별요인)과 ④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요인으로 구별되는바 이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분석하여 격차율을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가치형성요인	조건 및 항목	비 고
외부적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입지요인 (토지요인)
내부적요인	당해 전체건물과 관련하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물요인
개별적요인	당해 구분건물에 관련하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래의 동향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024 타경 113981
부동산 임의경매

나.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가치형성요인		격차율(대상/사례)	
요 인	세항목	비교치	비 고
외부적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본건은 사례대비 외부적요인 대등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내부적 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본건은 사례대비 내부적요인 대등함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 (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개별적 요인	층별 효용	0.98	본건은 사례대비 층별효용 등에서 개별적요인 열세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등함
누 계	비준율 = 외부적요인 × 내부적요인 × 개별적요인 × 기타요인	0.980	-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상기 평가과정을 거쳐 기준시점의 시산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산 식		$\text{사례가액}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 \times \text{면적} = \text{시산가액}$						
대상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전유 면적 (㎡)	시산가액 (원)	결정가액 (원)
	No	사례가격 (원/㎡)						
1	1	9,548,501	1.00	1.01059	0.980	79.07	747,735,515	748,000,000

V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의견

1. 참고 가격자료

가. 인근 가격수준

가격수준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은 9,200,000 ~ 9,700,000원/㎡ 수준으로 파악됨
------	---

2.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본건의 감정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47번지 외				
명 칭	층/호수	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전 유	대지권		
창동주공 아파트 323동	제5층 제507호	79.07	56.26	748,000,000	-

3. 결정의견

- 본건 부동산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의 감정평가의 관계법규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원칙에 근거하여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의 소유권 대지권은 일체성을 지니며 통상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별도 평가는 곤란하나 본 평가에서는 귀원 요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한국부동산연구원 등에서 정한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참고하여 "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 에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50	347, 350 주공 아파트 제323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15층				
				1층	810.53			
				2층	789.92			
				3층	789.92			
				4층	789.92			
				5층	789.92			
				6층	789.92			
				7층	789.92			
				8층	789.92			
				9층	789.92			
				10층	789.92			
				11층	789.92			
				12층	789.92			
				13층	789.92			
				14층	789.92			
				15층	789.92			
				지하층	789.81			
	1.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47	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1,247.3			
	2.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50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570.1			
				(내)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제5층 제507호	79.07	79.07	748,000,000	비준가격
					56.26			
				1,2.소유권대지권	124,817.4x-- 124,817.4	56.26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598,400,000 149,600,000	
	합 계						₩748,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소재 지하철1·4호선 「창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등이 밀집한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역(1·4호선: 창동역) 및 간선·지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지상15층 지하1층건 내 제5층 제507호로서

(사용승인일: 1990.09.06)

- 외벽: 모르타르위 페인팅마감 등,
-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 창호: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욕실, 거실, 주방 및 식당, 다용도실, 발코니, 현관 등)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승강기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왕복6차선, 동측으로 왕복4차선, 남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 등 각각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대로3류(폭25m~30m)(접합),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도: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47번지 외 323동 제5층 제507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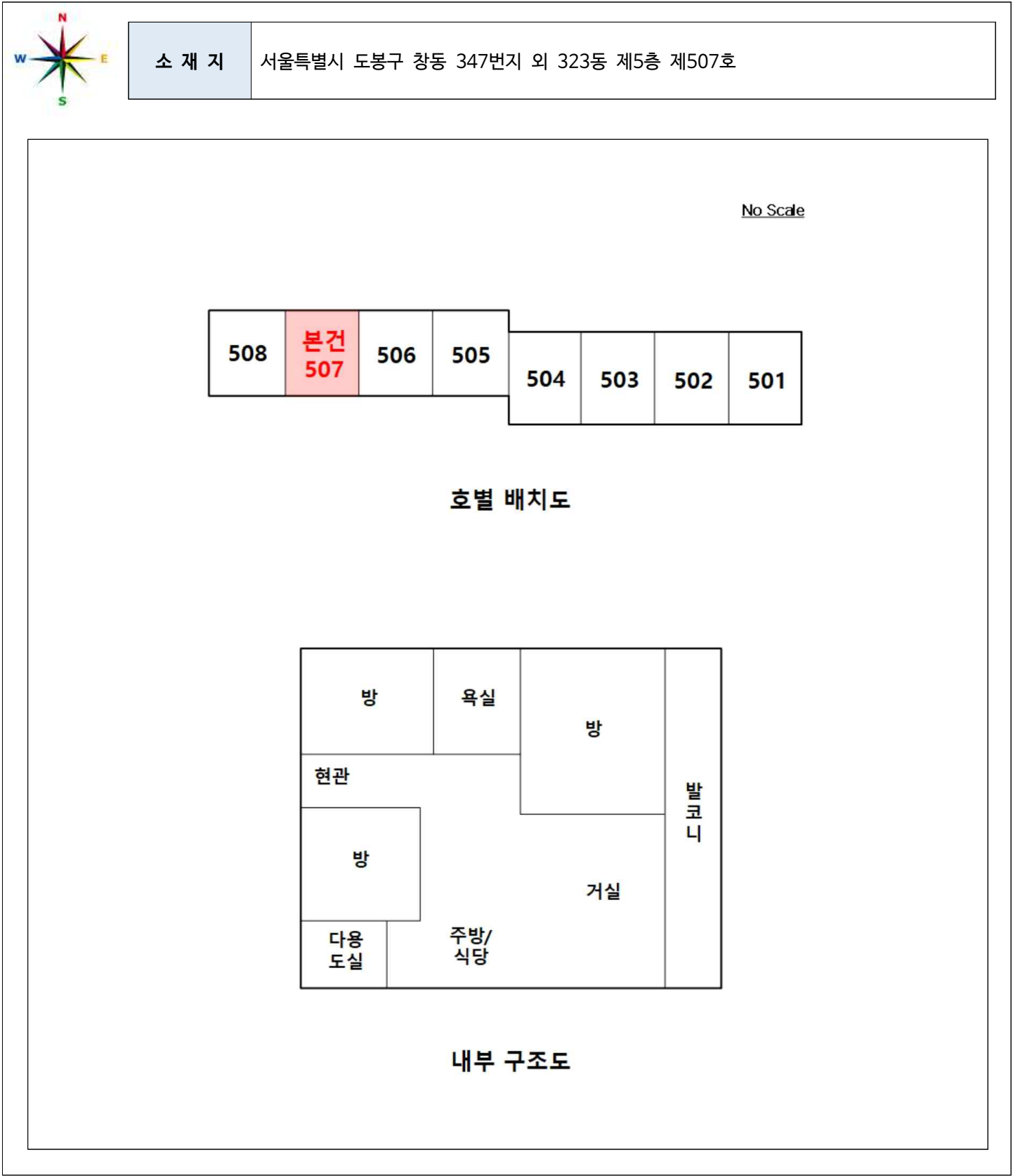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47번지 외 323동 제5층 제507호



내 부 구 조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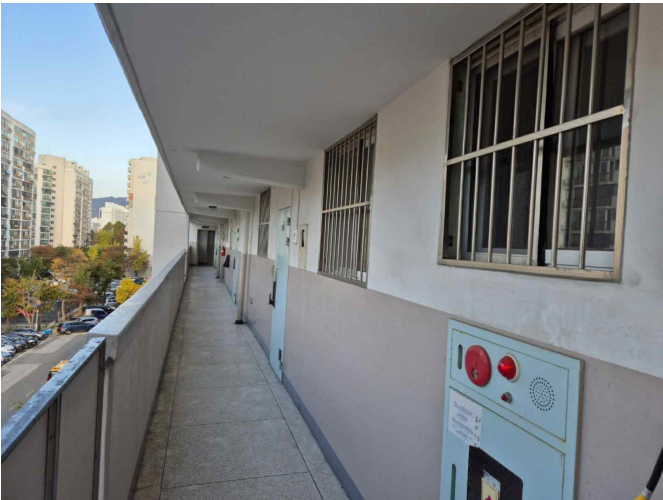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접면도로 및 주위환경



공용부분



본건 현관전경